

-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및 KOSHA-MS 전환대응을 위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변경안내

제도개선부 운영주

1 인증업무처리규칙 제 · 개정(안) 비교

2 향후 추진계획

1 인증업무처리규칙 제 · 개정[안] 비교

인증업무처리규칙 제 · 개정(안)

KOSHA 18001[안]	KOSHA-MS[안]
제2조[정의] “추가” 23. 심사팀 보조자[이하 “심사원보” 라 한다]란 제19조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단에서 행하는 심사원 시험에 합격한 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의 실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입증된 자로 심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말한다. 24. “전환” 이라 함은 이 규칙에 따른 인증심사원(심사원보 포함) 및 인증사업장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업무처리규칙에 의거한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신설> <삭제>



인증업무처리규칙 제·개정(안)

KOSHA 18001(안)	KOSHA-MS(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②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 건설사업관리·설계 및 감리 또는 시공하는 사업·사업장으로서 사업주가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발주기관 2. CM·설계 및 감리업체 3. 종합건설업체 4. 전문건설업체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 적용한다. ②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를 발 또는 시공하는 사업·사업장으로서 사업주가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발주기관 2. <삭제> 3. 종합건설업체 4. 전문건설업체



인증업무처리규칙 제·개정(안)

KOSHA 18001(안)	KOSHA-MS(안)
제5조[계약]	제5조[계약]
① ~③ [생략]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일선기관장은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이 다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심사일수를 최대 1/2 까지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일선기관장은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이 다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심사일수를 최대 1/2 까지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다. 다만 전업종의 경우,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다.



인증업무처리규칙 제·개정(안)

KOSHA 18001[안]	KOSHA-MS[안]
제11조[인증서와 인증패의 교부]	제11조[인증서와 인증패의 교부]
① ~⑤ [생략]	① ~⑤ [현행과 같음]
⑥ 이사장은 인증 신청 사업장이 공단과 공동인증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인증기관[이하 “공동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인증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인증기관과 협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이사장이 제6항에 따라 공동인증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시 공동인증기관의 심사원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삭제>

인증업무처리규칙 제·개정(안)

KOSHA 18001[안]	KOSHA-MS[안]
제11조[사후심사]	제12조[사후심사]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를 필요에 따라 외부 안전보건전문기관 또는 공동인증기관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④ <삭제>
제13조[인증의 취소]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심사 또는 연장심사를 거부하는 경우 3. 공단으로부터 인증 취소 사유에 대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 등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위배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1 [현행과 같음] 2. ----- · 기피 · 방해----- 3. ----- 부적합사항----- ----- ---- 4.<[삭제]>

인증업무처리규칙 제 · 개정(안)

KOSHA 18001[안]	KOSHA-MS[안]
제13조[인증의 취소]	제13조[인증의 취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인증 이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고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다만, 건설업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 최근 3년간 연속해서 1,000대 건설업체 평균환산재해율 이상이고 환산재해율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6. 인증 이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고사망만인율 이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다만, 건설업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은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이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인증사업장이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인증업무처리규칙 제 · 개정(안)

KOSHA 18001[안]	KOSHA-MS[안]
<신설>	제28조[심사원보 자격의 소멸]
	시험합격일로부터 3년 이내 심사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심사원보는 그 자격이 소멸된다.

인증업무처리규칙 제 · 개정(안)

KOSHA 18001(안)	KOSHA-MS(안)
제28조의2(심사비의 감면) 이사장은 제2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하여는 심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건설업 : 발주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 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건설업외 :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3.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기술지도 A등급 사업장과 A등급 사업장의 사내·외협력업체	제30조(심사비의 면제 또는 감면) ① 이사장은 제2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비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 2호의 경우 심규 인증신청에 따른 실태심사·인증심사·사후심사(첫 번째 연장심사 전까지에 한함)비용을 전부 면제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② 이사장은 제2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사비를 1/2 감면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기술지도 A 등급 사업장과 A등급 사업장의 사내·외 협력업체의 경우 다음연도 심사비용 2.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증심사·사후심사(첫 번째 연장심사 전까지에 한함)비용



인증업무처리규칙 제 · 개정(안)

KOSHA 18001(안)	KOSHA-MS(안)
부칙	부칙
제1조(목 적) 이 부칙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이하 “이 규칙” 또는 “구[舊]규칙” 이라 한다]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이하 “신[新] 규칙” 이라 한다]간 인증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3년(2022.06.30) 이후 폐기한다.	
제3조(KOSHA 18001 인증유효기간) ① 구[舊]규칙(KOSHA 18001)에 따른 인증의 최대 유효기간은 제2조 시행일로부터 3년의 종료일(2022.06.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2조 시행일부턴은 구[舊]규칙(KOSHA 18001(제 841호))에 따른 신규 인증신청을 받지 아니 한다.	

인증업무처리규칙 제·개정(안)

KOSHA 18001[안]	KOSHA-MS[안]
부칙	부칙
제4조[인증사업장 경과조치] ① 제2조 시행일 이전에 구[舊]규칙(KOSHA 18001)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사업장은 제2조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 신[新]규칙(KOSHA-MS)에 따라 사후·연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구[舊]규칙(KOSHA 18001)에 따른 인증은 자동 소멸된다.	
제5조[심사원 경과조치] ① 제2조 시행일 전에 구[舊]규칙(KOSHA 18001)에 따라 심사원으로 등록한 자는 전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구[舊]규칙(KOSHA 18001)에 따라 심사원자격을 취득한 심사원은 제1항에 따른 전환교육을 이수한 후, 신[新]규칙(KOSHA-MS)의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환교육은 시행일 이후 3년간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환교육을 제3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수하지 않은 자는 구[舊]규칙(KOSHA 18001)에 따른 심사원자격이 소멸된다.	



인증업무처리규칙 제·개정(안)

KOSHA 18001[안]	KOSHA-MS[안]
부칙	부칙
제6조[심사원보 경과조치] ① 구[舊]규칙(KOSHA 18001)에 따라 심사원보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2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구[舊]규칙(KOSHA 18001)에 따른 심사원보의 참여 실적은 신[新]규칙(KOSHA-MS) 시행일 이후에도 인정된다. 다만, 구[舊]규칙(KOSHA 18001)에 따른 심사원보 자격자가 신[新]규칙(KOSHA-MS)에 따른 심사에 보조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에 앞서 제5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원보 중 제2조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원으로 미등록 시, 구[舊]규칙(KOSHA 18001)에 따른 심사원보 자격이 소멸된다.	



인증업무처리규칙 제 · 개정(안)

KOSHA 18001(안)	KOSHA-MS(안)
부칙	부칙
제7조(심사원의 심사범위) ① 구[舊]규칙(KOSHA 18001)에 따라 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제5조 제3항에 따른 전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심사원은 구[舊]규칙(KOSHA 18001)에 따른 심사에만 참여할 수 있다. ② 구[舊]규칙(KOSHA 18001)에 따라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육을 이수한 심사원 또는 신[新]규칙(KOSHA-MS)에 따라 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심사원은 구[舊]규칙(KOSHA 18001) 과 신[新]규칙(KOSHA-MS)에 따른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인증업무처리규칙 제 · 개정(안)

KOSHA 18001(안)	KOSHA-MS(안)
부칙	부칙
제8조(인증전환심사) ① 구[舊]규칙(KOSHA 18001)에 따라 예정된 사후심사 또는 연장심사와 병행하여 전환심사를 수행할 경우, 전환심사일수는 신[新]규칙(KOSHA-MS)에 따른 사후심사일수의 20%를 추가한다. 다만 전환심사는 최소 1MD(man · day)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환심사일수 산정 시 사후심사일수의 20% 계산 결과의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 처리한다. ③ 전환심사 심사비는 신[新]규칙(KOSHA-MS) 별표5 심사비를 따른다. ④ 전환심사 신청은 사업장에서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인증업무처리규칙 제 · 개정(안)

KOSHA 18001(안)

[별표5]

2. 최소 심사일수

구 분	실태심사	인증심사	사후심사	연장심사
50인 미만	2	2	1	2
50인 ~99인	2	3	2	3
100인 ~299인	3	4	3	4
300인 ~999인	3	5	4	5
1,000인 ~1,999인	4	6	5	6
2,000인 ~4,999인	5	8	6	7
5,000인 ~9,999인	6	10	7	8
10,000인 ~19,999인	7	12	8	9
20,000인 이상	8	14	9	10

KOSHA-MS(안)

[별표5]

2. 최소 심사일수

구 분	실태심사	인증심사	사후심사	연장심사
20인미만	1	2	1	1
20인 ~49인	2	2	1	2
50인 ~99인	2	3	2	3
100인 ~299인	3	4	3	4
300인 ~999인	3	5	4	5
1,000인 ~1,999인	4	6	5	6
2,000인 ~4,999인	5	8	6	7
5,000인 ~9,999인	6	10	7	8
10,000인 ~19,999인	7	12	8	9
20,000인 ~31,999인	8	14	9	10
32,000인 ~49,999인	10	17	10	15
50,000인 ~69,999인	12	19	11	18
70,000인 ~99,999인	15	22	12	21

2 향후 추진계획

향후 계획(안)

1. 심사원 자격 전환(예정)

- ☐ 전환교육기관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 교육시간 : 1일 8시간
- ☐ 교육계획 : 19년 6월(2회)부터 심사원 전환교육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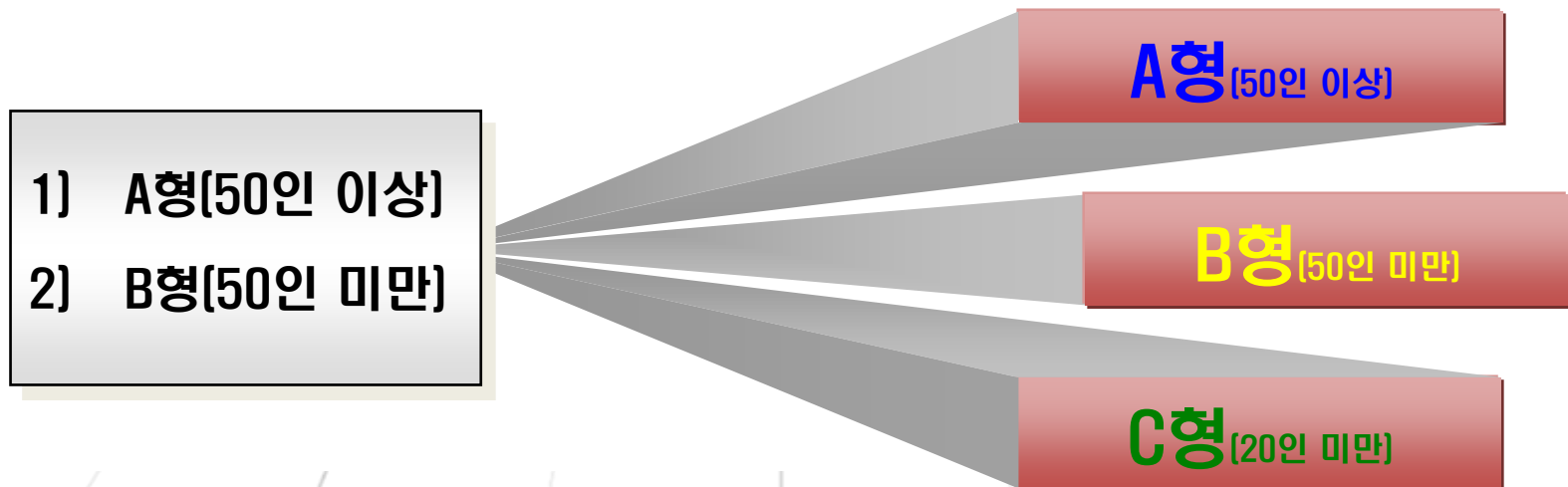
4. 사업장 인증전환(예정)

- ☐ 사후 또는 연장심사 단계에서 신청
- ☐ 전환심사 : KOSHA-MS 사후심사일수의 20% 추가



5. 안전인증기준의 세분화

- A형 :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조직이 갖춰진 사업장에 적용
- B형 : 안전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현장작동형)
- C형 :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적용(위험성평가, 법규, 리더십)





안전 앞에 늘 겸손하세요!



감사합니다!